

제10차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결과보고

□ 회의개요

- 일시 / 방법 : '22.8.18.(목) 14:00~15:20 / 화상회의
- 참석 : 시도 자치경찰위원장 등 18명 (인천경기북부 위원장 불참, 세종 공석)

□ 주요 회의내용

- 위원회 소속 경찰관 파견연장 관련 대응방안 논의

⇒ **위원장협의회 최종 의견(안)을 유지**하고, 행안부장관·인사혁신처 면담 등을 통해 지속적인 건의

구분	내용
대전	행안부·인사혁신처 입장 고수로 파견 경찰관 감소(10명→6명), 경찰관 특채 가 필요할 수 있음
부산	정원 확대가 어렵다면 파견경찰관 근무기간을 최소 2년 이상 으로 협의하여 근무 안정성 확보 필요
경남	치안정책을 위원회가 아닌 시·도경찰청에서 연구 하고 개발 하도록 지휘·감독하는 방안 필요
광주	정원 확대가 힘들면 경찰청 내 자치경찰 조직(생활안전국, 교통국 등) 정원 이관 건의 필요
경기남부	자경위가 시·도경찰청과 경쟁하듯 정책을 집행하기 보다 '심의·의결기구' 로 나아가야 할 것임
충북	① 자치경찰위원장 - 시·도경찰청장간 인사협약 으로 우수 인재 유치 ② 행안부·인사혁신처와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하고, 준비 철저 및 강한 압박 필요 ③ 현 일원화 모델 하에서 인력 보충은 정부의 의무임. 가외성 원칙에 따라 정책 개발 경쟁은 필요

- 자치경찰위원회 회의결과 행정안전부 통보 관련 논의

⇒ **협의회 차원의 통일된 입장** 보다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자체 판단**하여 조치

구분	내용	
미 통보	전북	행안부장관의 재의요구권은 법령 위반 등으로 극히 이례적인 경우에 행사됨 경찰법 등 관련 법 상 행안부장관에게 통보하라는 명시적 규정이 없음
	제주	위원회 의결이 법령 위반될 경우 시·도경찰청은 행안부장관을 통해 우회적으로 재의를 요구할 수 있음. 현재 회의결과를 시·도경찰청에 통보하고 있으므로 행안부 통보는 불필요함
	충남	자치경찰위원회는 독립된 합의제 기구이므로, 행안부 장관 통보는 적절하지 않음
통보	대전	모든 회의록은 공개하고 있고, 행안부 통보는 위원회가 시민들을 위해 하는 일들을 '알려주는 의미' 로 하고 있음

□ 향후계획

- 제11차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 '22. 9. 1.(목) 17:00
- 위원장협의회-경찰청 정책간담회 : '22. 9. 6.(화) 14:00
- 위원장협의회-행정안전부장관 면담 추진 및 일정 확정 후 시도 자경위 공유